입 법 정 보

2017-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4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5
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5
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6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6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7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9
1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11
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11
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12
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13
16.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14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4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16
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17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17
2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7
22.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가보훈처) ····· 18
23.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1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20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0
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0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21
28.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국방부) ····· 23
2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24
30.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5
31.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6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6
3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27
34.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7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8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9
3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31
38.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32
39.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32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3
4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33
4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34
4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34
4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35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35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6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6
4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 37
4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38
5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9
5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40
52.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40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2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21. • 마감일자 : 2017. 8. 24.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도선 정보제공 불이행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도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도선 시 도선사와 선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도선사와 선장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1. • 마감일자 : 2017. 8. 31.

○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방법(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나. 신고필증 교부 방법(안 제2조제8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다. 신고서의 전자적 제출(안 제22조제1항제1호)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1. • 마감일자 : 2017. 8. 31.

○ 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2.
- 마감일자 : 2017. 9. 12.

○ 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대리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다.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2.
- 마감일자 : 2017. 9. 11.

○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8. 22.
- 마감일자 : 2017. 10. 2.

○ 가. 정비대충장비는 평시에 정비지원이 즉각 불가능하거나, 정비기간에 대상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지원부대에서 확보하여 운용하도록 인가된 완성장비 또는 구성품임.

나.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적용할 경우 군이 보유한 장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비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평시에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23.
- 마감일자 : 2017. 10. 2.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그간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23. • 마감일자 : 2017. 10. 2.

○ 출자·출연 기관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신중한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임· 직원의 겸직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 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을 모두 회원으로 하는 기관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오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어느 하나만 회원으로 하는 기관도 제외 대상으로 하도록 표현을 명확화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법 조문 적용 예외(안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방교육청이 설립한 기관은 교육부가 관리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방법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시 출자·출연 기관의 지분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의 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으로 보도록 명확화 함.

마.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주민복리 증진, 공공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과 유사

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정함.

사. 임·직원의 겸직 제한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로 업무 몰입도를 제고함.

아.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행(안 제27조)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하도록 함.

차.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32조제1항)

재무구조의 변경, 기관의 경영활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경영공시 하도록 함.

카. 통합공시제도 개선(안 제33조)

1)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닌,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 대상 기관으로 하여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확대.

2) 출자·출연 기관이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

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종료 통보 등(안 제34조의2 신설)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4.
- 마감일자 : 2017. 9. 4.

○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아동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난임시술,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의 본인부담을 인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50%에서 30%(차상위 20 ~ 30%에서 5 ~ 15%)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바목)

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종별 30 ~ 60%에서 종별 구분없이 10%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10) 및 자목 신설)

라.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 카목 신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4.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입안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7항)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기초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하거나 중첩된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제4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거치도록 개선함.

다.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안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기존의 미관지구과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경관지구를 자연·시

가지・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보호지구를 역사・중요시설물・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3제5항)

보전용도의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원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여 수립・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바. 경관지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2조제3항제2호)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면서 미관지구 안에서 제한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돌출하는 건축물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관지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사.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안 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1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8. 24.
- 마감일자 : 2017. 10. 10.

○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근거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 설치 조항을 신설함.
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조항을 신설함.

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5.
- 마감일자 : 2017. 10. 10.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중 급여비용이 높은 수동휠체어를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품목으로 규정하고자 함.

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5.
- 마감일자 : 2017. 10. 10.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8. 25.
- 마감일자 : 2017. 9. 4.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치매질환 치료 및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노인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95와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질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 및 방법에 따라 치매질환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너목 신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1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28.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1)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시·도지사 추천 인원과 연근해 인접 시·도 숫자가 불일치해 시·도 간 형평성이 저해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여 연근해 인접 시·도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기대되고 위원 임명 시 연근해 인접 시·도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기간 조정 및 신설(안 별표 1)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6.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8. 28.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10. 11.

○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샘물 수입신고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신청서 제출시 첨부

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6조 관련 별표 5 개정)

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중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허가신청서,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6조의6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 국제적멸종위기종 허가 등 행정처리 수수료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79조제11호 개정)

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오염검사수수료횟수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37조제2의2호 개정)

자. 하수도법 시행규칙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7조 관련 별표 16 개정)

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8조의14제3항 개정)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함

라. 임금체불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6 신설)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마.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제33조의2)

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

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배상금 등 결정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법률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미수습자와 관련한 배상금 등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신청 기한 안내 문구를 서식에 추가
나.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서식에서 효력이 상실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문구를 삭제

2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10. 1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하여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저압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분야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시험 인증 문제 해소 및 분산형전원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표준 부합 전기설비 설계시공방법 도입을 통한 전기산업 기술발전을 위하여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 범위와 같게 하려는 것임
○ 가. 저압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고압 범위 변경 개정(안 제2조제9호)

2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10. 10.

○ 전세임대주택에 다수가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약가능 주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세주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다수가 거주하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그룹홈(가구원수 5인 이상) 등의 주거여건 및 주택 물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규모(85m2) 초과주택에 입주를 허용

22.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8. 29. • 마감일자 : 2017. 9. 20.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적·법적 전통의 발원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조한 선조들의 독립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조 및 제3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제4조 및 제5조)

1)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등 13명 내외의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87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제8조, 제9조 및 제11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등을 수행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함.

23.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8. 30. • 마감일자 : 2017. 10. 10.

○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선박 간에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주파수 및 통신제원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제구역별 관제통신 제원의 별도 고시(안 제11조 개정)

1) 「해사안전법」 제36조제7항에서 위임한 관제통신 제원이란 호출부호(명칭), 관제통신시설, 통신채널, 운용시간 등으로 정의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수시·적기적으로 신설·변경되어야 하므로 종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 신설(안 별표 1 개정)

1) 종전 관제통신 주파수 중에 통신로 번호(CH) 20·22번은 통신 방식을 단신에서 복신으로 수정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해상통신용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중 통신로 번호(CH) 75·76·77·87·88번 등을 관제통신 주파수로 포함함.

다.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삭제(안 별표 3 삭제)

1) 안 제11조에 따라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별표 3은 삭제함.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8. 30.
- 마감일자 : 2017. 9. 19.

○ ‘17.4.18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834호)에서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8. 30.
- 마감일자 : 2017. 10. 10.

○ 고령농가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담보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 허용(안 제19조의9)

나.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31.
- 마감일자 : 2017. 10. 10.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 기준 (안 제2조의2)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규정

나.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안 제2조의3)
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 관리방법 등 규정

다. 운송계획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4)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를 정함
*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

라.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명령 관련사항(안 제2조의5, 6)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 시 운행중지명령 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8. 31.
- 마감일자 : 2017. 10. 10.

○ 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안전관리 책임자 직무 구체화,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궤도사업 경영을 위해서는 궤도사업의 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하여,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의견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협의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안 제7조의2)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의 허가·승인(변경포함)을 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운행 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안 제22조제4항)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궤도운송종사자 교육 의무화(안 제27조제3항내지제5항, 안 제34조제1항제5호)

①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궤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궤도사업자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의제처리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궤도사업자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산림법 등 6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

마. 협의·신고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협의) 궤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견 제출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신고) 지자체장이 궤도사업 변경신고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화물용 전용궤도 신고의 경우 30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28.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8. 31.
- 마감일자 : 2017. 10. 10.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라 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방법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함

○ 가.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의 전직임용(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기능군무원중 일반군무원으로 전직 희망시 직시험을 통하여 전환

2) 전직시험은 국방부 주관으로 연 1회, 3년간 시행

3) 전직시험은 개인별 자격요건 구비조건에 구분 시행

가) 필기시험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다) 서류전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전직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현행「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적용

5)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규정

나.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직 임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별정군무원은 이전에 수행한 직무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 일반군무원,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2) 종전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담직위로 운영하고, 전담직위평가 합격시까지 별도 관리

3)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안 제10조)

1) 종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으로 전환시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100% 인정

2) 종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 종전 별정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최저연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 100% 인정

라. 대우군무원(안 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군무원 유사직렬로 전환시 대우군무원은 그대로 승계

2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8. 31.
- 마감일자 : 2017. 10. 10.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

나. 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다. 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마. 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바. 기 타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

30.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1.
- 마감일자 : 2017. 10. 11.

○ 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한시정원 증원 및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제11조, 제1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5 개정)

-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한시조직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지주회사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공시점검과 11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

-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나.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한시정원 증원(안 제9조, 제17조, 제19조, 별표 5 개정)

- 디지털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경쟁정책국장 분장사무에 디지털 조사 및 분석 사무를 신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7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을 증원

-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동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다.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개정)

- 정부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 분장사무 중 정부3.0 기능을 정부혁신 기능으로 조정

31.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8. 16. • 마감일자 : 2017. 8. 21.

○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 하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4항)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9. 1. • 마감일자 : 2017. 9. 7.

○ 신기술,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기술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나.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제품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다. 인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1) 신기술, 신제품 인증거부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포함

3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9. 1.
- 마감일자 : 2017. 10. 11.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하되,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4.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1.
- 마감일자 : 2017. 9. 21.

○ 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도핑 방지 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2)에 관한 근거 신설

1) 학생선수들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도핑의 의미, 도핑 방지 규정,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

을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2)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도핑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정신을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됨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4.
- 마감일자 : 2017. 10. 16.

○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방법과 절차,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안 제6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지자체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중 관리자의 범위에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장을 추가하여 규정함.

다.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규정(안 제19조의3)

복구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안 제19조의6)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4.
- 마감일자 : 2017. 10. 16.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1.17. 공포, 2018.1.18.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 보완(안 제10조의2)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의 계획 통보, 성과목표 지표 제출 확정 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26조).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

2) 기관별 핵심기능 및 주요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대체시설 및 장비확보 등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 절

차에 대해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안 제30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등(안 제31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바.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고,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사.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5조의2).

아.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안 제64조의2)

1)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공공기관 등을 정의하고,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계를 요청하도록 함.

2)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자. 복구비등의 선지급 대상,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을 명시함(안 제73조의3, 제73조의4).

차. 재난원인조사 제도 규정 보완(안 제75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재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이내에 권고사항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카.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의2)

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규정(안 제81조의3)

1)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제품 등으로 정하고 인증 기준을 규정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4.
- 마감일자 : 2017. 10. 16.

○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보고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안 제27조, 제27조의1,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27조의6)

부두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료(별표4),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약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사전협의 조항 등을 신설

나. 화물유칙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안 제27조의7 신설)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7)됨에 따라, 위약금 부과 대상·기간 및 위약금 산정 방법(별표5) 등을 규정

다.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안 제27조의8 신설)

법률(제26조의9)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회사와 계약해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규정

라.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1조 신설)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법률 제27조의3)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의무 제외 대상자, 교육 훈련 과정 및 내용(별표 6) 등을 상세 규정

38.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9. 4.
- 마감일자 : 2017. 9. 22.

○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 및 업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9.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9. 4.
- 마감일자 : 2017. 10. 16.

○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되어 그간 전·현직 경찰과 소방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찰청 소속의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른 차별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소방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경찰과 유사한 대표적 위험직군으로서 경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간 소방기관 소속 일반공무원과 소방관 가족들은 병원 의료비 획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일소하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 경찰관서 소속 근로자도 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안 제2조 제1항)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의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나. 소방기관도 경찰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근로자, 소방관 가족들도 의료비 감면 및 감경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5.
- 마감일자 : 2017. 9. 25.

○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6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설치·관리(안 제15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민 및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설치·관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4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3조의2 등)

4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고 활성단층 지도의 검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지진발생시 저수지 붕괴와 기능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대비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8조의2 등)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의3제2호)

저수지의 내진설계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5호)

4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9. 21.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양수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안 제1조의2 신설)

법률에서 정한 ‘해양수산업’의 8가지 분야(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아목)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를 명시함

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변경 시 심의 생략(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추가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13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공고함

마. 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체류 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후 같은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집단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지원 하는 소득이전 지출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확대 (안 제38조)

소득이전 지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함.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따라, 광역버스의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신규노선 면허·등록기준에 근로요건을 반영하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버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의 연속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운송업체 안전관리 강화,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연이은 인명피해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인 졸음운전은 버스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방만한 운영실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휴식시간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4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 예고일자 : 2017. 9. 7.
- 마감일자 : 2017. 9. 27.

○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후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은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여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현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

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경호처의 행사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4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9. 7.
- 마감일자 : 2017. 10. 17.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 일선조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6, 제5조제2호, 제5조의3 신설)

1)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안 제4조의2신설)

2)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정관례 고시에서 상향조정하여 정함(안 제4조의6, 제5조제2호 신설)

3)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정체성을 강화(제5조의3 신설)

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 신설)

1)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중앙회·경제지주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신설)

2) 농협경제지주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안 제45조의3 신설)

3)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경

제지주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안 제45조의5 신설)

다. 조합 우선출자와 관련된 규정의 상위 법령 삭제 및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라. 조합원의 자격확인 방법 개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신설)

1)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에 관한 분쟁 예방(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신설)

2)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외부전문가(중앙회 ·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제외)로 정함으로써 감사기능 강화를 도모 (안 제22조 변경)

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추가(별표 4 변경)

5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7.
- 마감일자 : 2017. 10. 17.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공시정보항목 및 범위·기관·횟수·시기를 삭제하고, 국가수준 직업 기초능력평가의 경우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련 공시정보항목 등을 함께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고, 기존 안전관리·점검 현황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까지 추가로 공시하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5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7.
- 마감일자 : 2017. 10. 17.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관련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52.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8.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제도 개선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활성화를 추진하며, 임용 전 실무수습자 등에 대한 공직사회 내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비

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공무원임용령」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정부 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안 제45조)

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또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2, 제31조, 제57조의3)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7·9급 공무원의 임용절차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기존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게 보수 100%(기존 80%)를 지급하도록 하며,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금품·향응수수자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 추진(안 제14조, 제23조, 제32조)

금품·향응수수자, 성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기간 3

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4조, 제45조, 별표5)

특별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승진 시 결원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필수 보직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는 것임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8.

○ 가. 제조업자 결격사유 정비(안 제6조제1항제5호)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행위능력이 회복되었음에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업허가 등이 취소된 자가 행위 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자료보존 의무(안 제8조제3항)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 시 첨부한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 행정처분 정비 등(안 제36조제1항, 제2항)

1) 추적관리대상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을 작성 및 그 기록을 보존·제출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사 · 재평가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 등이 있어 의료기기의 원재료나 구조 등을 변경 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명령의 대상을 확대함

라.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안 제38조의2)

이 법의 위반행위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8.

○ 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조의2)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에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제4조, 제8조 및 제13조)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재 합리적 조정(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제4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우리 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신설)

가정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되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의 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5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8.

○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 및 소속 ‘관 국 외’ 모두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

56.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9.

○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 설정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제2조제2호)

2)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용도별 거주밀도에 바닥면적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용도별 거주밀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조제2호가목)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 사전재난영향성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제9호 신설)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의결기관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제6조)

3) 검토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근거조항 마련(제6조의2)

4)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신설(제6조의3)

5) 심의절차(제7조)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조항 신설(제7조의2)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및 절차 정비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정비(제9조제2항제1~9호)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제3항제3호)

라.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 회의의 개최시기,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11조)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비 및 신분보장 등(제12조)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는 업무를 총괄재난관리자가 수행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토록 규정(제1항, 제2항)

2) 건축물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정 조치 요구 및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제4항, 제5항)

바.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 신설(제13조)

1)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제1항~제6항)

2) 이행실태 확인(법 제10조), 출입 통보(법 제25조), 자료제출 명령(법

제26조), 재난대응 지도점검(규칙 제11조) 등 산재되어 있는 점검관련 조항을 안전점검 조항으로 일원화

3)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3조의3)

4) 안전점검 결과 조치명령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 근거 신설(제26조의2)

사.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재난정보의 공유·전파 조항 삭제

- 제9조제2항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계획' 조항 중복 삭제(제15조)

- 제17조의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조항과 중복되는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조항 중복 삭제(제23조 삭제)

아.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제18조제4항)

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제28조의2)

차. 벌금 처벌 조항 변경 및 신설(제31조, 제32조)

1) 제25조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1항으로 변경(제31조제1호)

2) 제26조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4항으로 변경(제31조제2호)

3) 제12조제2항를 위반하여 대리자를 미 지정시 벌금 신설(제32조제1호)

4) 제25조제3항를 위반한 처벌 조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제32조제2호)

5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9.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7.25)」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재산 개발·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하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추가

5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8.
- 마감일자 : 2017. 10. 18.

○ 최근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 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으로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적용례(안 부칙 제2조)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제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